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5. 27.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2일 박남오의원외 5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임사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년 5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광희관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99. 8. 31. 법률 제6002호)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6672호('99. 12. 31)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정례회 제도의 도입 - 매년 2회 개최(안 제2조)
 - 제1차 정례회 집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은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하고,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한다(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기회 대신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서도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마련한 제정안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3
----------	-----

제안년월일 : 2000. 5. 12.
제 출 자 : 박남오의원외5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99. 8. 31. 법률 제6002호)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6672호('99. 12. 31)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정례회 제도의 도입. - 매년 2회 개최(안 제2조)
- 제1차 정례회 집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
-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은 제1차 정례회에 심의·의결하고,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한다(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 지방자치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조 례 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②항중 “매년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5.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5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5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1999. 8. 31)되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장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서주민의 수를 같은 법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규정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20세 이상 주민 1/50의 범위내 인원이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청구) 규정에 의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연
서 주민수를 500인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50 범위내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토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에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타 자치구와의
비교검토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